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8186(본소), 2020다248193(반소) 판결 [(본소)

점유회수청구등 유치권부존재확인]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8186(본소), 2020다248193(반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나37517(본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박종익, 이동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김길호

판결 선고 2021. 1. 14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나37517(본소), 2019나 37524(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2007. 11. 14.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1. 12. 14.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U,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AC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A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창호공사등을 시행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사 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2. 8.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3. 7. 24. 청 구기 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6862) 이 에 항소하였으나 2014. 4. 18.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나5660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D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다가 2016. 12. 11. D가 퇴거하 자 그 이후부터 F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점유를 빼앗아 2017. 7.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 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응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 응소했더라도 C은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일 뿐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인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응소행위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위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이 민법 제208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대법원 1967. 6.20. 선고 67다479판결,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및 대법원 2014. 2.27. 선고 2013다7574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2017. 7.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권에 기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대법관 김재형대법관 이동원주심 대법관 노태악